

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870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00. 5. 4.

발 의 자 : 이 하 연 의원
외 5 인

□ 제 안 이 유

- 현행 의회 회의운영제도상 의원은 시정질문이나, 안전관련 토론, 신상발언등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발언할 수 밖에 없어 의정 및 시정 발전을 위한 의견제시등 의원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의회토론 문화 및 회의운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워
- 본회의 중 5분자유발언제도를 도입하여 의원의 의견발표 기회를 확대하여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.

□ 주 요 골 자

- 의장은 본회의 개의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의원에게 의정 및 시정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5분 자유발언을 허가 할수 있으며,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의장에게 신청하도록 함.(안 제31조의2)

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

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1조의2(5분자유발언) ①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 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의원에게 의정 및 시정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(이하 “5분자유발언”이라 한다)을 허가할 수 있다.
- ②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의 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- ③5분자유발언의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(신 설)</p>	<p><u>제31조의2(5분자유발언) ①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의원에게 의정 및 시정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이내의 발언(이하 "5분자유발언"이라 한다)을 허가할 수 있다</u></p> <p><u>②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의 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5분자유발언의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한다.</u></p>

5분자유발언제 운영상황 비교검토

내 용	경기도의회	성남시의회	검토의견 (안산시의회)
발언시간	○ 5분발언제 · 국회와 동일	○ 3분 발언제 · 30분안에 다수의원이 발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	○ 5분 발언 적정 · 3분 발언시간 부족
발언내용 (회의규칙상)	○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	○ 중요한 시정관심사안	○ 의정 및 시정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 발언
발언주요 내용(사례)	○ 도정 및 주요현안 사항, 의정 및 기타	○ 시정현안사항, 의정 및 기타	○ 의안 및 청원에 관해 발언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음.
본회의중 발언시기	○ 본회의 개의직후, 의사일정 상정전	○ 본회의 개의직후, 의사일정 상정전	○ 좌동
1회기중 발언신청 의원수(평균)	○ 평균 2.4명	○ 1~2명	
발언신청일 (요지서제출)	○ 본회의 전일 · 당일 신청할 경우 신상(의사진행) 발언 유도	○ 본회의 전일 · 의원 모두가 규정 준수	○ 발언신청일 엄격히 준수토록 운영
문제점 및 개선점	○ 발언신청서에 발언 요지 충분히 기재 하지 않는 사례 ○ 정치성 발언 금지	○ 발언시간 3분 짧다는 의견	○ 문제점 사전 검토 반영
운영장비	○ 본회의장에 타이머 설치 운영 (발언시간 통제)	○ 본회의장에 타이머 설치 활용	○ 타이머 설치 필요성 있음.